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9. . . (제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출자	국무총리 이낙연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연월일	2019. . .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시공시 방법을 실효성이 있는 방법 위주로 축소하는 한편,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 산업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자산운용 관련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규제를 개선 (안 제81조제1항)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는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 총 수의 100분의 2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나, 이를 100분의 50까지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경우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기초재산이 동일하거나 기초재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증권으로 보도록 함.

나. 수시공시 규제 개선(안 제89조제2항)

집합투자업자가 수시공시하는 방법 중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본점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삭제하고, 투자자에게 직접 알리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등 일부 수시공시 사항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수시공시 사항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마련함.

다.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안 제103조제4항·제5항, 별표1)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재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을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입을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의 운용방법을 정함.

라. 온라인소액증개를 통한 전자증권 발행 가능 여부를 명확화(안 제117조의10제7항, 제117조의14제1항·제2항·제3항, 제449조제3항)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재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을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입을 합

산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부동산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의 운용방법을 정함.

마. 수익자총회 제도 개선(안 제190조제8항)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의 출석수익자의 과반수 및 발행수익증권의 8분의 1 이상 또는 10분의 1 이상에서, 출석수익자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수익증권의 16분의 1 이상 또는 2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바. 투자신탁 해지사실의 보고기한 완화(안 제192조제2항)

현재는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없이 금융위원회에 해지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나, 존속기간 만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완화함.

사. 집합투자기구 결산서류 축소(안 제239조제1항)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에서 제외함.

아. 업무집행사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안 별표6)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사원 및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주요 토의 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3.0 ~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증권”을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이 동일하거나 해당기초재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기초자산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전자우편”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로서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3조제4항 중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를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탁할 수 있다. 다만, 그 수탁금액과 제105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신탁업자가 제4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제10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2.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17조의10제7항 각 호 외 본문 중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를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이하 “전자등록“이라 한다)”로 하고,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을 “그 예탁일, 보호예수일 또는 전자등록일”로 한다.

제117조의14제1항 중 “예탁결제원”을 “예탁결제원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중 ”예탁결제원“을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제190조제8항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각각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보고,”로, “8분의 1 이상”을 “16분의 1 이상”으로, “보고,”를 “보며,”로, “10분의 1 이상”을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9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을 해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49조제3항제6호의4 중 “예탁 또는 보호예수”를 “예탁, 보호예수 또는 전자등록”으로 한다.

별표1 제120호의2 및 제12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7호 중 “후단”을 “후단 또는 단서”로 한다.

120의2. 제103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한 경우

120의3.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별표6 제목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 및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 하고, 기존의 제1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증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기수익자총회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연기수익자총회부터 적용한다.

제5조(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해지되는 투자신탁부터 적용한다.

제6조(업무집행사원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6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0조제1항의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이 동일하거나 해당 기초재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기초자산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나. ~ 사. (생 략)

2. (생략)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 략)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
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
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

나.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_____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9조(수시공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생 략)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단서 신설>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100분의 50--
-----.

-----.

바.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수시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우편, 전자우편, 또는 이
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 다만,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로서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삭 제>

<p>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p> <p>~ ③ (생 략)</p> <p>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u>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u>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p>	<p>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p> <p>~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u>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탁할 수 있다.</u> 다만, 그 수탁금액과 제105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p>
<p><u><신 설></u></p> <p>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p>	<p>⑤ 신탁업자가 제4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u>재산을 수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u></p> <p>1. <u>제10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u></p> <p>2. <u>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u></p> <p>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p>

<p>① ~ ⑥ (생략)</p> <p>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자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u>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 ----- <u>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이하 “전자등록”이라 한다)-----, 그 예탁일, 보호예수일 또는 전자등록일로부터 ----- ----- ----- -----.</u></p>
<p>1. ~ 2. (생략)</p> <p>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p> <p>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u>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p>
<p>② <u>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u></p>	<p>① ----- ----- ----- ----- ----- <u>예탁결제원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u></p>

<p>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관----- -----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u>예탁결제원</u>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③ <u>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u> 관----- ----- ----- ----- ----- -----. -----.</p>
<p>제190조(수익자총회) ① ~ ⑦ (생 략)</p>	<p>제190조(수익자총회)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u>이</u>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u>8분의 1 이상</u>”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10분의 1 이상</u>”으로 본다.</p>	<p>⑧ ----- ----- ---. <u>이</u> 경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각각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보고, ----- ----- ----- 16분의 1 이상----- 보며, ----- <u>20분의 1 이상</u>--.</p>
<p>⑨.⑩ (생 략)</p>	<p>⑨.⑩ (현행과 같음)</p>

<p>② ~ ⑥ (생 략) 제449조(과태료) ① ~ 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6의3. (생 략)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u>예탁</u> 또는 <u>보호예수</u> 소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 19. (생 략)</p> <p>④ ~ ⑥ (생 략)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p> <p>1. ~ 120. (생 략) <u><신 설></u> <u><신 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p> <p>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 ----- <u>예탁, 보호예수</u> <u>또는 전자등록</u>----- ----- 6의5. ~ 19.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1. ~ 120. (현행과 같음) <u>120의2. 제103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한 경우</u> <u>120의3.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u></p>
--	---

[별표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
한 처분 사유

<신 설>

1. ~ 27. (생 략)

[별표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 및 해
당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에 대
한 처분 사유

1.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

계처리를 한 경우

2. ~ 28. (현행 제1호부터 제27
호까지와 같음)